

# 마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9-159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. 11. 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제안 이유

어린이의 건강 증진을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 제1항에 따라 마포구의회 동의 구하고자 함

## 2. 주요 내용

### 가. 민간위탁의 목적

- 1) 급식소 규모 및 대상 연령에 맞는 식단 및 영양·위생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효과적인 지도 방안 등에 있어 전문성이 필요 함.
- 2) 상시적으로 급식소의 실태조사 등 정보관리 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따른, 전담 관리가 요구 됨.
- 2) 역량 있는 전문 식품기관(대학교, 단체 등)인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

### 나. 민간위탁의 내용

- 1) 위탁기간 : 3년
- 2) 위탁사무 범위
  -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·영양관리 실태조사, 순회방문 지도
  -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급식영양 컨설팅
  - 어린이 급식소의 시설유형, 급식 규모별 식단 및 프로그램 개발
  - 대상별(어린이, 학부모·모, 교사, 조리원 등) 위생·영양교육 실시 등

3)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4) 수탁기관 선정주체 :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(별도 구성)

다. 소요예산 : 300,000천원(국비900,000천원, 시비105,000천원, 구비105,000천원)

라. 추진 일정

- 1) 공개모집 공고 : 2020. 4. ~ 5월
- 2) 신청서 접수 : 2020. 6. 1. ~ 6. 30.
- 3) 선정 심사 : 2020. 7. 1. ~7. 10.(기간중 1일)
- 4) 협약 체결 : 2020. 7월중
- 5) 위탁 운영 : 2020. 9월

※ 추진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### 3. 참고사항 : 관계법령

<지방자치법>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<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>

제12조의2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5. 1. 28., 2019. 7. 9.>

<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>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 등)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